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1개 분야, 총 6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C	홍보	6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세종특별자치시)

※ 근무예정부서는 희망부서,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24.8월말)로부터 6개월 ※ 계약종료일: '25.2.28.
 - (보 수) 월 2,060,740원 ※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출·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분야	담당업무
인턴C	홍보	○ 국정과제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 언론보도 분석 지원 ○ 청년의 날·청년주간 행사 기획·운영 지원

※ 주요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가산요건

가. 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우대요건(해당자에 한함)
홍보 (인턴 C)	❶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또는 관련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 관련 학과: 신문방송학, 언론·홍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디자인, 그래픽, 웹디자인 등
	❷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GTQ 포토샵 1·2급, GTQi 일러스트 1·2급, ACP,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❸ 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다. 가산요건 :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참고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전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4.7.30.(화)~'24.8.5.(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원서접수	'24.7.30.(화)~'24.8.5.(월)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전자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8.7.(수)	■ <u>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u> 게시
면접전형	'24.8.13(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개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4.8.22.(목)	■ <u>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u> 게시

5. 응시원서 제출

- 제출기간 : '24. 7. 30.(화) ~ '24. 8. 5.(월) 18:00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개별발송예정)

- e-mail: opminsa@korea.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 예시: 홍길동(인턴C)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24.8.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모아찍기 금지)

※ 제출서류 중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서류	비고
I. 공통사항(필수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 자필 서명 필수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2호)	· A4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3호)	· 자필 서명 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 자필 서명 필수
5.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별지 5호)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6호)	
7.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II.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9. 우대·가산요건 관련 증빙서류	· (학력) 재학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등 ※ 전공분야 표기 ※ 해외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자격증) 자격증 사본 등 · (장애인) 장애인증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발행 증명서 등

7. 유의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044-200-2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